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인력,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(9급 2명)을 행정·기술직군 정원 2명(9급 2명)으로 전환하며,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“제25호”를 “제25호의3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장기전략기획팀장”을 각각 “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기전략기획팀장”을 “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
및 평가 등 총괄

7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
관리 등 총괄

제7조제10항제2호 중 “전국해양레저스포츠”를 “해양레저스포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4호 중 “운영 및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·지원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제8조제9항제12호 중 “인정”을 “인정관련 협정 체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5항제15호 중 “규제에 관한 업무”를 “규제 및 관련 법·제도의 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7항제2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어촌지역 활성화 총괄·조정

17. 수산물 안전사고 긴급 대응 총괄

17의2. 수산물 생산·유통·소비 등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지도·감독

17의3. 수산물 위해정보 양방향 소통 체계 개발 및 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

제10조제4항제5호 중 “우수사업장”을 “지정사업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“항로표지”를 “국제항로표지협회(IALA) 및 항로표지”로, “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”를 “국제협력”으로 한다.

9.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·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

제12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1호(종전의 제12호) 중 “천일염”을 “소금의 품질검사, 천일염”으로 한다.

10. 수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제도의 운영·관리

12.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업무(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)

제15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수로사업”을 “해양조사·정보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해양조사 연구·개발사업의 기획 및 조정

14. 해양조사기술자 교육·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·관리

제1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종합해양과학기지”를 “해양과학기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평균해수면 및 기본수준면 등의 결정고시

11. 해양관측 표준화 및 해양관측성과 품질관리

15. 기본수준점표지 설치·관리 및 현황 고시

제15조제5항제4호 중 “해양사고 관련 예보자료”를 “해양재난 관련 예측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인터넷 해양방송”을 “해양예보방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“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”을 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해양예보용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
9. 이안류 감시 및 정보 제공

11. 해양예측 기술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
제15조제6항제7호 중 “영해기준점·기선·해안선”을 “수로측량기준점·영해기준점·기선·해안선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

15. 극지 등 관할해역 외에서의 해양조사

제1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수로도서지”를 각각 “해양정보간행물”로, 같은 호 중 “관리 기준”을 “연구·개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

“수로도서지”를 “해양정보간행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해도편집도”를 “항해용 간행물 간행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“수로도서지”를 각각 “해양정보간행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수로도서지”를 “항해용 간행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항해용 간행물 간행 · 배포의 위탁

6.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관리 및 산업진흥 관련 업무

12. 해양정보의 보관 · 열람 · 활용 지원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운영
· 관리

제15조제7항제14호 중 “국제수로훈련센터”를 “국제수로훈련센터 · 국제수로기구 이러닝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해양관측 · 수로측량 및 해도”를 “해양조사 및 해양정보”로 한다.

1. 해양과학조사연구계획의 수립 · 시행

제16조제4항제4호 중 “조사선”을 “해양조사선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수로조사 신고”를 “관할해역 일반수로측량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문서 · 보안 · 관인 및 기록물의 관리와 인사에 관한 업무

2. 예산 · 회계 · 결산과 계약 · 지출

제18조제4항제1호 중 “건조계약의 체결”을 “건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

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선용품”을 “장비 및 선용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,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어업조정, 어업조정위원회 관리·운영 및 어업조정 사후관리

3의2. 국내외어선 안전조업·지도·단속 및 불법어업 예방계획 수립
· 시행

3의3. 한·일 및 한·중 어업협정 이행

5. 수산 관련 법령의 교육·지원·지도 및 단속

5의2. 육상어업관리를 위한 지도·단속 계획 수립 및 운영

11. 양식장 및 낚시어선 등 출입·검사에 관한 사항

12.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리·운영 및 교육

제18조제5항제2호 중 “해안무선국”을 “종합상황실·해안무선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해양 선박사고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운영·관리

5. 어업지도선 무선국 허가 관리 및 통신보안 자재·비밀문서의 수발
· 관리

7. 무인비행장치 보급·운영·교육 및 운용계획 수립·시행

8. 한중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·관리(서해어업관리단에 한한다)

제29조제3항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해양사고통계의 종합·분석 및 해사안전 지식·정보의 제공
12.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, 해양사고 방지 및 관련 법·제도의 운영
13. 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 증진에 관한 교육
14. 해양사고 관련 국제안전관리규약 및 조사분야 국제협력
15.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제4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조직 및 정원”을 각각 “조직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3항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2월 28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6 중 총계 “594”를 “59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90”을 “593”으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시설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“51”을 “52”로 하고, 전산사무관 “2”를 “3”으로 하며, 전산사무관 3 다음에 “행정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시설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환경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7”를 신설하고, “행정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시설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환경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6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7 중 총계 “597”을 “60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93”을 “596”으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시설사무관

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“50”을 “51”로 하고, 전산사무관 “2”를 “3”으로 하며, 전산사무관 3 다음에 “행정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5”를 신설하고, “행정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4”를 삭제한다.

별표 24 중 행정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운전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“110”을 “111”로 하고, 토목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25 중 행정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운전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“110”을 “111”로 하고, 토목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26 중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2”를 “1”로 한다.

별표 26의2 중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2”를 “1”로 한다.

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0 1.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(존속기한: 2021년 12월 31일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

별표 31 중 2. 제46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1년 12월 31일)
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2월 28일”로 하고, 3. 제46조제4항 관련
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1년 12월 31일)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
월 31일”로 한다.

해양수산부령 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
정령 부칙 제2조 중 “충원하여야”를 “충원해야”로 한다.

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
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장기전략기획팀”을 “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”
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기전략기획팀장”을 각각 “장기전략데이터기
획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9]

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44조의3 관련)

평가대상 조직

조 직	정 원	평가기간
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	15명 (4급 1명, 5급 3명, 6급 4명, 7급 4명, 8급 3명)	2023년 12월 31일까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생략)	제5조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정책기획관은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, 제15호의2,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, 제20호의2 및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25 호의3----- -----.
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· <u>장기전략기획팀장</u> ·혁신행정담당관·규제개혁법무담당관·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, 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·규제개혁법무담당관·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, <u>장기전략기획팀장</u> 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	④ ----- --- <u>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</u> - -----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
⑥ <u>장기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</u> 1. ~ 5. (생략) 6. <u>해양수산 부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업무</u> 7. <u>해양수산 부문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업무</u> 8. · 9. (생략) ⑦ ~ ⑩ (생략) 제7조(해양정책실) ① ~ ⑨ (생략) ⑩ <u>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1. (생략) 2. <u>전국해양레저스포츠 행사에 관한 업무</u> 3. ~ 23. (생략) 24. <u>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및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·지원</u> 25. (생략) ⑪ ~ ⑱ (생략) 제8조(수산정책실) ① ~ ⑧ (생략)	⑥ <u>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-----</u>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</u> 7. <u>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</u> 8. · 9. (현행과 같음) ⑦ ~ ⑩ (현행과 같음) 제7조(해양정책실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양레저스포츠 -----</u> ----- 3. ~ 23. (현행과 같음) 24. ----- <u>운영</u> 25. (현행과 같음) ⑪ ~ ⑱ (현행과 같음) 제8조(수산정책실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

략)

⑨ 수출가공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1. (생략)

12.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업무

13. ~ 26. (생략)

⑩ ~ ⑭ (생략)

⑮ 지도교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4. (생략)

15.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규제에 관한 업무

16. ~ 19. (생략)

⑯ (생략)

<17>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략)

2. 어촌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업무

3. ~ 16. (생략)

17. 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

과 같음)

⑨ -----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-----
-- 인정관련 협정 체결-----

13. ~ 26. (현행과 같음)

⑩ ~ ⑭ (현행과 같음)

⑮ -----
-----.

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-----
----- 규제 및 관련 법·제도의 운영

16. ~ 19. (현행과 같음)

⑯ (현행과 같음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어촌지역 활성화 총괄·조정

3. ~ 16. (현행과 같음)

17. 수산물 안전사고 긴급 대응총괄

<신 설>

<신 설>

18. ~ 26. (생 략)

⑮ · ⑯ (생 략)

제10조(해사안전국) ① ~ ③ (생 략)

④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4. (생 략)

5. 선박용 물건의 예비검사 및 형식승인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관한 업무

6. · 7. (생 략)

8. 삭 제

9.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

10. ~ 18. (생 략)

⑤ (생 략)

⑥ 항로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의3. (생 략)

2.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및

17의2. 수산물 생산·유통·소비 등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지도·감독

17의3.수산물 위해정보 양방향 소통 체계 개발 및 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

18. ~ 26. (현행과 같음)

⑮ · ⑯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해사안전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----- 지정사업장 -----

6. · 7. (현행과 같음)

9.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·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

10. ~ 18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.

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
2. 국제항로표지협회(IALA) 및

<u>국제기구에 관한 업무</u> 3. ~ 33. (생략) ⑦ (생략) 제12조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 ① ~ ④ (생략)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9. (생략) <u>10.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운영·관리</u> <u>11. 소금의 품질검사</u> <신설> <u>12. 천일염 생산기준의 고시 및 천일염 인증의 사후관리</u> 13. (생략) ⑥ (생략) 제15조(국립해양조사원) ①·② (생략)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5. (생략) <u>6. 해양조사기술의 개발 지원</u>	<u>항로표지</u> ---- <u>국제협력</u> 3. ~ 33. (현행과 같음) ⑦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10. 수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제도의 운영·관리</u> <u><삭제></u> <u>12.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업무(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)</u> <u>11. 소금의 품질검사, 천일염</u> -- -- 13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 제15조(국립해양조사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해양조사 연구·개발사업의</u>
--	---

7. ~ 12. (생략) 13. <u>수로사업의 등록 및 관리</u> 14. <u>수로기술자의 교육·훈련</u> ④ 해양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평균해면 및 기본수준면의 결정고시</u> 5. ~ 7. (생략) 8. <u>종합해양과학기지</u> 관리 및 운영 9. 삭제 10. (생략) 11. <u>해양관측 표준화계획 수립·시행</u> 12. ~ 14. (생략) <u><신설></u> ⑤ 해양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해양사고 관련 예보자료</u> 생산 및 전파	<u>기획 및 조정</u> 7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해양조사·정보업</u>----- 14. <u>해양조사기술자 교육·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·관리</u> ④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평균해수면 및 기본수준면 등의 결정고시</u> 5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해양과학기지</u> ----- --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해양관측 표준화 및 해양관측성과 품질관리</u> 12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기본수준점표지 설치·관리 및 현황 고시</u> ⑤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해양재난 관련 예측정보</u> --- -----
--	---

5. · 6. (생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
7. <u>해양예보용 해양지리정보 서비스 및 적용</u>	7. <u>해양예보용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</u>
8. <u>인터넷 해양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</u>	8. <u>해양예보방송</u> -----
9. <u>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</u>	9. <u>이안류 감시 및 정보 제공</u>
10. <u>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</u>	10. ----- <u>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</u>
11. <u>항해 위험지역에 대한 조류 예측정보 서비스</u>	11. <u>해양예측 기술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</u>
⑥ 수로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영해기준점·기선·해안선에 관한 조사 및 관리</u>	7. <u>수로측량기준점·영해기준점·기선·해안선</u> ---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<u>수로조사의 기술지도</u>	9. <u>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</u>
10. ~ 14. (생략)	10. ~ 14. (현행과 같음)
15. <u>극지 수로조사</u>	15. <u>극지 등 관할해역 외에서의 해양조사</u>
⑦ 해도수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
1. <u>수로도서지 간행계획 수립·시행</u>	1. <u>해양정보간행물</u> -----
2. <u>수로도서지 간행 및 관리 기</u>	2. <u>해양정보간행물</u> -- <u>연구·개</u>

준에 관한 업무 3. <u>수로도서지</u> 편집자료의 조사 · 분석 4. <u>해도편집도</u> 및 측량원도의 보관·관리 5. <u>전자해도의 제작 및 연구· 개발</u> 6. <u>해양주제도(海洋主題圖)의 연구 및 간행</u> 7. <u>수로도서지</u> 판매 대행업자의 지정·관리 및 지도 8. <u>수로도서지</u> 판매가격 결정 및 복제 승인 9. · 10. (생략) 11. 해군작전 지원을 위한 <u>수로 도서지</u> 제공 12. <u>수로도서지</u> 업무의 위탁· 수탁 및 해양정보 산업의 진 흥에 관한 업무 13. (생략) 14.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<u>국제수로훈련센터</u> 운영 관리 ⑧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.	발----- 3. <u>해양정보간행물</u> ----- ----- 4. <u>항해용 간행물 간행</u> ----- ----- 5. <u>항해용 간행물 간행·배포의 위탁</u> 6. <u>해양정보서비스업의 관리 및 산업진흥 관련 업무</u> 7. <u>해양정보간행물</u> ----- ----- 8. <u>해양정보간행물</u> ----- ----- 9. ·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<u>항해 용 간행물</u> ----- ----- 12. <u>해양정보의 보관·열람·활용 지원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운영·관리</u> 13. (현행과 같음) 14. ----- <u>국제수로훈련센터·국제수로 기구 이러닝센터</u> ----- ⑧ ----- -----.
--	---

1. <u>해양 예측 연구 계획의 수립</u> · 시행 2. ~ 4. (생략) 5. <u>해양관측·수로측량 및 해도</u>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 6. ~ 8. (생략) ⑨ (생략) 제16조(해양조사사무소) ① ~ ③ (생략) ④ 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조사선의 운영·관리</u> 5. · 6. (생략) 7. <u>수로조사 신고에 관한 업무</u> 제18조(어업관리단) ①·② (생 략)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<u>문서·보안·관인 관리 및</u> <u>인사에 관한 업무</u> 2. <u>예산·회계·결산 및 용도</u> 3. ~ 7. (생략) ④ 어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1. <u>해양과학조사연구계획의 수</u> <u>립·시행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해양조사 및 해양정보</u> ----- ----- 6. ~ 8. (현행과 같음) ⑨ (현행과 같음) 제16조(해양조사사무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해양조사선</u>----- 5. · 6. (현행과 같음) 7. <u>관할해역 일반수로측량</u>-- 제18조(어업관리단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<u>문서·보안·관인 및 기록물</u> <u>의 관리와 인사에 관한 업무</u> 2. <u>예산·회계·결산과 계약·</u> <u>지출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
---	---

1. 어업지도선 <u>건조계약의 체결</u> 및 <u>수리계획의 수립·시행</u> 2. (생략) 3. 어업조정, <u>국내외어선 안전조</u> <u>업·지도·단속 및 불법어업</u> <u>방지 계획 수립·시행, 한·일</u> <u>및 한·중 어업협정 이행</u> <신설> <신설> 4. <u>선용품의 수급·관리</u> 5. <u>수산 관련 법령 준수 지도 및</u> <u>어업인 지원</u> <신설> 6. ~ 10. (생략) <신설> <신설> ⑤ 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(생략) 2. <u>해안무선국 및 불법어업신고</u>	1. ----- <u>건조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어업조정, 어업조정위원회 관 <u>리·운영 및 어업조정 사후관</u> <u>리</u> 3의2. <u>국내외어선 안전조업·지</u> <u>도·단속 및 불법어업 예방계</u> <u>획 수립·시행</u> 3의3. <u>한·일 및 한·중 어업협정</u> <u>이행</u> 4. <u>장비 및 선용품</u>--- 5. <u>수산 관련 법령의 교육·지원·</u> <u>지도 및 단속</u> 5의2. <u>육상어업관리를 위한 지</u> <u>도·단속 계획 수립 및 운영</u> 6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양식장 및 낚시어선 등 출</u> <u>입·검사에 관한 사항</u> 12. <u>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 관</u> <u>리·운영 및 교육</u> ⑤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종합상황실·해안무선국</u> ----
--	--

센터 운영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5. <u>어업지도선 선박국 허가 관리</u> 6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⑥ 삭제 ⑦ (생략) 제29조(조사관) ①·② (생략) ③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~ 9. (생략) 10. <u>해양사고통계의 종합·분석</u> 11. (생략) 12. <u>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</u>	-----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<u>해양 선박사고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운영·관리</u>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어업지도선 무선국 허가 관리 및 통신보안 자재·비밀문서의 수발·관리</u> 6. (현행과 같음) 7. <u>무인비행장치 보급·운영·교육 및 운용계획 수립·시행</u> 8. <u>한중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·관리(서해어업관리단에 한한다)</u> ⑦ (현행과 같음) 제29조(조사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해양사고통계의 종합·분석 및 해사안전 지식·정보의 제공</u> 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,</u>
---	---

<u>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업무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제44조의3(<u>평가대상 조직 및 정</u> <u>원</u>)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<u>조직 및 정원</u>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 다. 제46조(한시정원) ① (생 략) ② 삭 제 ③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 별 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 수산부에 둔다. ④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	<u>해양사고 방지 및 관련 법·</u> <u>제도의 운영</u> <u>13.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안전</u> <u>증진에 관한 교육</u> <u>14. 해양사고 관련 국제안전관</u> <u>리규약 및 조사분야 국제협력</u> <u>15.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</u> <u>· 운영</u> 제44조의3(<u>평가대상 조직</u>) ----- ----- ----- <u>조직</u>----- ----- --. 제46조(한시정원) ① (현행과 같 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2023년 2월 28일</u>-----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
--	---

5조제1항에 따라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. ⑤ ~ ⑪ (생략)	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 ⑤ ~ ⑪ (현행과 같음)
해양수산부령 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해양수산부령 제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)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(행정주사보 3명, 행정서기 5명)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<u>충원하여야</u> 한다.	제2조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충원해야</u> ----- ----.
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

행으로 신설되는 <u>장기전략기획팀</u> 및 <u>수산직불제팀</u>은 각각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<u>장기전략기획팀장</u>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<u>수산직불제팀장</u>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<u>장기전략기획팀장</u>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하고, <u>수산직불제팀장</u>이 분장하는 사항은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한다.	----- <u>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</u> ----- -----. ② ----- <u>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6]

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(제41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594	597	+3
일반직 계	590	593	+3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51	52	+1
전산사무관	2	3	+1
행정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	<신 설>	197	+197

<u>행정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</u> <u>시설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</u> <u>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</u> <u>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또는</u> <u>해양수산연구원</u>	<u>196</u>	<u><삭 제></u>	-196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17]

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(제41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597</u>	• <u>600</u>	+3
일반직 계	• • <u>593</u>	• • <u>596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<u>50</u>	<u>51</u>	+1
•	•	•	
전산사무관	<u>2</u>	<u>3</u>	+1

<u>행정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</u> <u>시설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</u> <u>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</u> <u>사무관</u> <u>· 방재안전사무관 · 식품위생사</u> <u>무관 · 수의사무관 또는</u> <u>해양수산연구관</u>	<u><신 설></u>	<u>205</u>	+205
<u>행정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</u> <u>시설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</u> <u>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</u> <u>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또는</u> <u>해양수산연구관</u>	<u>204</u>	<u><삭 제></u>	-204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24]

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(제42조제7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행정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공업 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환경 서기보 · 운전서기보 · 방재안전 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	· · <u>110</u>	· · <u>111</u>	+1
· · 토목운영서기보	· · <u>3</u>	· · <u>2</u>	-1
· ·	· ·	· ·	

[별표 25]

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(제42조제7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• 행정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운전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	• • <u>110</u>	• • <u>111</u>	+1
• • 토목운영서기보	• • <u>3</u>	• • <u>2</u>	-1
• •	• •	• •	

[별표 26]

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(제42조제8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사무운영서기보	<u>2</u>	<u>1</u>	-1

[별표 26의2]

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(제42조제8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사무운영서기보	<u>2</u>	<u>1</u>	-1